

## ▶ 교육산업

### 1. 중국 교육산업 현황 및 특징

---

---

2002년 말 까지 중국에서 비준 설립한 중외합작 교육기관 및 프로젝트로는 총 712개로서 28개 성, 자치구와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1995년에 비교하면 9배가 증가되었다. 중외합작교육은 중국이 대외교류와 합작을 진행하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다. 총체적으로 볼 때 중외합작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이며 이미 질적인면에서나 특색 있는 경영방법을 가진 중외합작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.

### II. 관련 법률 및 정책

반포기관	관련 법률	시행일
국무원	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	2003년 9월 1일
전국인민대표대회	사립교육촉진법	2003년 9월 1일
국무원	사립교육촉진법실시조례	2004년 4월 1일

### III. 학교/학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

---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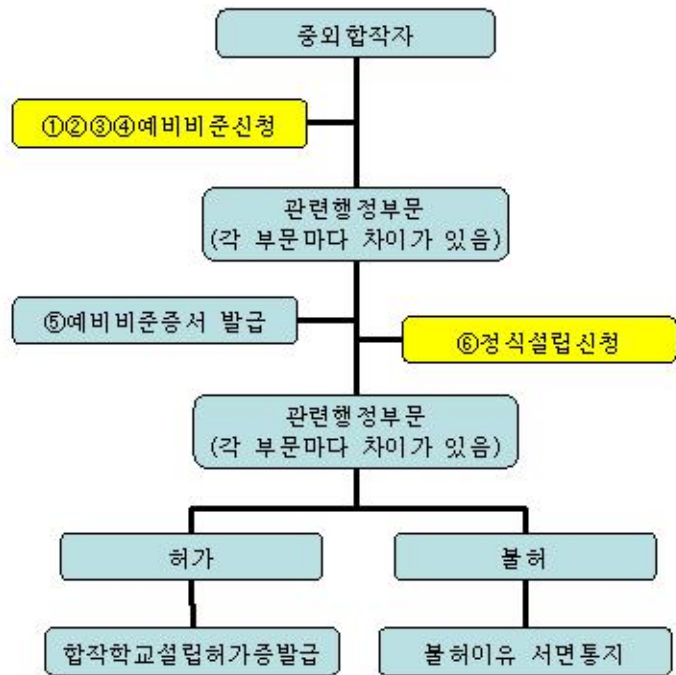
#### 1. 절차

①본과 이상의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하려면 교육부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.

②고등전문교육과 비학력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합작학교를 설립하려면 기구를 설립하는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.

③중등학력교육 및 검정고시 보조학습, 문화보습, 취학전교육 등의 합작학교를 설립하려면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교육국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.

④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는 합작학원은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인민정부 사회보장과 노동국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.



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부터 45일안에 예비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예비비준 시 설립비준증을 발급한다. 비준 거부 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⑥ 비준 취득 후 3년 내에 정식설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. 3년을 초과할 경우 다시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.

⑦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합작학교/학원이 비학력교육을 실시한다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정식설립을 신청하는 합작학교가 학력인정 교육을 실시한다면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비준 시 중외합작학교설립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거부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.

## 2. 구비서류

<b>중외합작 학교/학원 예비심사비준신청 구비서류</b>	
- 경영신청보고서	
보고서 기재사항:	
* 합작학교/학원 명칭	
* 배양목표, 학교설립규모, 학교설립레벨, 학교설립형식, 학교설립조건	
* 내부관리체제, 경비와 관리사용 등	
- 합작계약	
계약서 기재사항:	
* 합작기한, 쟁의해결방법 등	
* 자산출처, 자금액수 및 유효한 증명서류, 재산권	
* 기증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기증협의, 기증인의 성명, 기증재산의 액수, 용도와 관리방법 및 관련 증명서류	

- 합작학교 설립자 자금출자증명 (15%이상)

**정식설립신청 구비서류**

- 정식설립신청서
- 예비설립비준서
- 예비설립상황보고
- 중외합작학교의 정관, 제1기 동사회, 혹은 연합관리위원회구성인원명단
- 중외합작학교자산의 유효증명서류
- 교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, 교사, 재무인원의 자격증명

**중외합작 교육 및 학원관련사업 비교**

분야	적용 사항	근거법률
학교를 신규 설립하여 사업진행	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(2003. 9. 1. 시행) 법인으로 자격한정	·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(교육행정기관) ·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(노동행정기관)
학교 설립 없이 교육 Project 진행 (With 학교)	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학교설립실시방법 (2004. 7.1. 시행)	· 교육행정기관만 언급됨 (직업교육기관은 제외)
경영성조직과 교육 Project 진행 (With 회사)	공상행정관리국 관련 교육사업 관련 법규 적용	· 일반 공상국 관리 규정 (사립교육촉진법)